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4
----------	-----

제출년월일 : 2001. 12.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요율표를 별표 2로 분리함(안 제3조 및 별표 2)
- 나.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과 전자입찰참가수수료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명칭과 조문이 맞지 않는 조항을 관계법령과 일치시킴 : 수수료의 감면의 6건(안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라. 개별법령, 경상북도조례, 영주시 다른조례에서 수수료를 규정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 : 병적증명의 24건(안 별표 1)
- 마. 관계법령이 개정 및 폐지되어 근거규정이 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 : 부양사실증명의 27건(안 별표 1)
- 바. 발급실적이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위임조항이 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 : 영업주에 관한 증명의 28건(안 별표 1)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금)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입증지요금제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과 전자
입찰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1】

제 증명수수료율표

(단위:원)

구	분	기준	요금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①	인감증명	1통	300	일제신고등은 제외함
②	인감의 개인신고	1건	200	
2.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환지(예정지)증명	1필지	700	
②	환지예정지 분할	"	300	
③	환지예정지에 대한 중전 토지 분할	"	300	
④	체비지 분할 신청	"	300	
⑤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00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통	300	
②	지방세납세증명	"	300	
4. 회계에 관한 증명, 확인, 신청의 수리				
①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	
②	입찰참가신청	1건	10,000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5. 기타 제증명						
①	공장등록 증명	1통	300			
②	의약업소(휴·폐업) 증명	"	500			
③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300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기재 발급시 토지(임야) 대장등본 발급수수료 외 별도로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	
④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매	300			
1. 일반행정 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 계속 300			
②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③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가. 법 인	1건	20,000			
	나. 공인중개사	"	5,000			
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	500			
⑥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	1,000			
⑦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500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2. 건설관계				
①	사도개설 허가	1건	500	
②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③	토석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 1/1000	
④	기타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	"	점용료의 1/1000	
⑤	하천(소하천, 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	공사비또는 점용료의 1/1000	
⑥	하천(소하천, 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 신고	"	500	
⑦	재식 및 농업용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	1,000	
⑧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2,100	
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⑩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	500	
⑪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	500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⑨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2,300		
	: 변경	"	1,200		
○ 동 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3,500		
	: 변경	"	2,300		
4. 관광관계					
①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 재교부 2,000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40,000		
	: 변경	"	20,000		
○ 동 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50,000		
	: 변경	"	25,000		
나. 일반·기타유원시설업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20,000		
	: 변경	"	10,000		
○ 동 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25,000		
	: 변경	"	13,000		
5. 기타 제증명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1통	300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열람·복사등수수료요율표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개(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 1편이 1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켤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의안검토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239호
- 의안명 :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2. 제안이유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인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업담당 관리직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거 관련조항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중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삭제함
 - 여성복지회관장 : 삭제(일반직으로 전환)
 - 여성복지담당6급 : 삭제(일반직으로 전환)
 - 학예연구원 : 변동없음
 - 보건진료원 : 변동없음
 - 농기계교육교관 : 변동없음
 - 공기업회계원 : 변동없음
 - 여성복지상담원 : 삭제(일반직으로 전환)
 - 보건위생감시원 : 변동없음
 - 아동복지지도원 : 삭제(일반직으로 전환)

4. 검토의견

-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지방별정5급상당(여성복지회관장) → 사회복지직5급
 - 지방별정6급상당(여성복지담당) → 사회복지직6급
 - 지방별정7급상당(아동복지지도원) → 사회복지직7급
 - 지방별정7급상당(여성복지상담원) → 사회복지직7급으로 전환됨.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도행정 12200-11777(2001. 12. 3)호로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이 통보되었으며
 -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2 1.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1통	500	<삭제>	<삭제>	<삭제>	발급실적도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도 없으므로 존치 불필요
	② 중소기업자	"	500	< " >	< " >	< " >	
	③ 광업·공업·상업	"	500	< " >	< " >	< " >	
	④ 농가·비농가	"	200	< " >	< " >	< " >	
5. 시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	<삭제>	<삭제>	<삭제>	발급실적도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도 없으므로 존치 불필요
	② 생산실적	"	300	< " >	< " >	< " >	
	③ 수출실적	"	300	< " >	< " >	< " >	
	④ 납품실적	"	300	< " >	< " >	< " >	
	⑤ 건물사용	"	300	< " >	< " >	< " >	

현		행		개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안				
						기준	요액			
⑥	공작 원료수입	1톤	300	<삭>	계 >	<삭>	<삭>	발급실적도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도 없으므로 존치 불필요		
⑦	분배농지 상환원료	"	300	<">	>	<">	<">	'96. 1. 1부터 농지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령 폐지로 삭제		
⑧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계교부)	"	300	<">	>	<">	<">	발급실적도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도 없으므로 존치 불필요		
⑨	공작품록증명	"	300	<">	>	<">	<">	"5. 기타 제증명"란으로 이기		
⑩	실수요자증명	"	300	<">	>	<">	<">	발급실적도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도 없으므로 존치 불필요		
⑪	위자재(시설계,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			"		
	· 기소요량	1톤	3,000	<">	>	<삭>	<삭>			
	· 확정소요량	"	1,000	<">	>	<">	<">			
⑫	시설보유증명	"	300	<">	>	<">	<">			
⑬	(식품환경) 영업허가(부·폐업) 사실증명	"	300	<">	>	<">	<">			

현		행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⑩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1분	5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법령상 신고대상인 전 외약업소(약방, 약포, 도매상,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등)로 대상을 확대하여 "의약업소(휴·폐업)증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5. 기타제증명"관으로 이기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 >						
①	미분배 농지	1분	300	< " >		<삭제>	<삭제>	'96. 1. 1부터 농지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령 폐지로 삭제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1분 " "	300 300 300	< " > < " > < " >		<삭제> < " > < " >	<삭제> < " > < " >	발급실적도 없고 본조례의 "행정정보공개 관계" 수수료를 적용하면 필요로 하지 불필요		
③	공부 및 공부부분 열람 · 기본료 · 초과료	시간당 10분당	100 100	< " > < " >		<삭제> < " >	<삭제> < " >			
④	인·하기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	< " >		< " >	< " >			

현		행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개			
7. 도시계획동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계획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측량은 지적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하므로 삭제			
②	환지(예정지)증명	"	700	①					
③	환지에정지 분할	"	300	②					
④	환지에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	300	③					
⑤	< 삭제 '95. 8. 23 >			④					
⑥	체미지 분할 신청	1필지	300	⑤					
⑦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00	< 삭제 >		<삭제>	<삭제>	발급실적도 없고 조해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도 없으므로 존치 불필요			
⑧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	1필지	300	3. <삭제>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1통	300	①		지방세법이 개정(99. 12. 28) 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②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 증명	"	300	②	지방세납세증명				
③	< 삭제 '95. 8. 23 >			③					
④	징수유예 결정	1통	300	< 삭제 >		<삭제>	<삭제>	"지방세납세증명서"에 포함되므로 삭제			

현		개		개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요	회계	에	관한	증명, 확인, 신청의	수리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면	1부	300	<삭제>	<삭제>	<삭제>	발급실적도 없고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으로 대체가능하므로 존치 불필요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면	"	300	<">	<">	<">	발급실적도 없고 "하자보증금 납부"으로 대체가능하므로 존치 불필요					
③	원천징수 공제증명		"	300	<">	<">	<">	발급실적도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도 없으므로 존치 불필요					
④	공시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	300	<">	<">	<">	발급실적도 없고 "하자보증금납부"으로 대체가능하므로 존치 불필요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	300	①.....						
⑥	보상금 지불증명		"	300	<삭제>	<삭제>	<삭제>	발급실적도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도 없으므로 존치 불필요					
⑦	면세용도 물품증명		"	300	<">	<">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수수로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⑧	입찰참가신청		1건	10,000	②.....						
10.	주택에 관한 증명				<삭제>	<삭제>	<삭제>						
①	< 삭제 '95. 8. 23 >												
②	공(사)업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부	300	<삭제>	<삭제>	<삭제>	발급실적도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도 없으므로 존치 불필요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11. 행정정보공개관계				<삭제>		<삭제>						
① ~ ④ (생략)				< " >		< " >						
12. 기타 제증명				5.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톤	300	<삭제>		<삭제>						
② 화재증명		"	500	< " >		< " >						
③ 소방시설 완비 증명		"	500	< " >		< " >						
④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매	300	④						
⑤ < 삭제 '95. 8. 23 >												
⑥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1 제3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건당	300	<삭제>		<삭제>						
⑦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300	③						
< 신설 >				① 공장등록증명		1톤	300					
< " >				② 의약연소(유·폐연) 증명		"	500					

현		행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일반행정관계			1.						
①, ② < 삭제 '95. 8. 23 >	①, ② < 삭제 '95. 8. 23 >			①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00 계속300	④ < 삭제 >		<삭제>	<삭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95. 12. 30)으로 토지등금제도가 폐지되고 개별공시지가 적용으로 삭제
④ 토지등금 설정신청신차구조 신청	④ 토지등금 설정신청신차구조 신청	"	500	②			
⑤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⑤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⑦			
⑥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⑥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1건	500	③			
⑦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⑦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600	④			
⑧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⑧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가.			
가. 범 인	가. 범 인	1건	20,000	나.			
나. 공인중개사	나. 공인중개사	"	5,000	⑤			
⑨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⑨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	500	⑥			
⑩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⑩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	1,000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약	구 분	기준	
2. 산림관계					
① < 삭제 '95. 8. 23 >			< 삭제 >		
②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신청	1건	500	< 삭제 >	< 삭제 >	< 삭제 >
③ 개간허가중 교부	"	500	< " >	< " >	"
3. 농수산 관계					
①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500	< " >	< 삭제 >	< 삭제 >
②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신청 변경 신청	1건	500	< " >	< " >	< " >
③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	"	500	< " >	< " >	< " >
④ 도축검사수수료			< " >		
가. 소, 말	1두	400	< " >	< 삭제 >	< 삭제 >
나. 돼지, 양	"	80	< " >	< " >	< " >

현		행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다. 담. 오리		100수	150	<삭제>		<삭제>	<삭제>		
라. 칠면조, 거위		10수	40	< " >		< " >	< " >		
마. 메추리, 비둘기		100수	100	< " >		< " >	< " >		
바. 개, 사슴		1두	20	< " >		< " >	< " >		
사. 토끼		10두	40	< " >		< " >	< " >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	< " >		<삭제>	<삭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수수료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	
②	< 삭제 '95. 8. 23 >								
③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1건	1,000	< 삭제 >		<삭제>	<삭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수수료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자로 변경)	
④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500	< " >		< " >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수수료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	
⑤	철과시강 판매사 외면 승인 신청	"	1,000	< " >		< " >	< " >	동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철과시강개설자가 판매사를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	

현		행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5. 건설관계									
①	산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1건	500	2. ① 산도개설허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산도변경(개축, 증축, 폐지) 허가는 "수수료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		
②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외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	허가서의 공사비의 1/1000	②			
③	토지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 1/1000	③			
④	기타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	점용료의 1/1000	④			
⑤	하천(소하천, 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외)변경허가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⑤			
⑥	하천(소하천, 공유수면)허가 사항 변경신고	"	500	⑥			
⑦	재식 및 농업용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	1,000	⑦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㉑ 도시장 설치허가 신청	최대	1,000	<삭제>	<삭제>	<삭제>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수수료없음"으로 되어 있어 삭제
㉒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㉑			
가. 기관을 장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최대	500	가.	
나. 기관을 장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900	나.	
다. 기관을 장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1,300	다.	
라. 기관을 장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2,100	라.	
㉓ 통행료(도선료)의 취소 허가신청	1건	1,000	<삭제>	<삭제>	<삭제>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수수료없음"으로 되어 있어 삭제
㉔ 공영주택의 양도, 양수 등 승인신청	"	500	<">	<">	<">	발급실적도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도 없으므로 존치 불필요
㉕ 공(사)영주택(중개추)승인신청	"	500	<">	<">	<">	"
㉖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	<">	<">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수수료없음"으로 되어 있어 삭제

현			개			개	정	사	유
구	분	행	구	분	안				
			기준	요액		기준	요액		
㉔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⑨		
㉕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500	⑩		
㉖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	500	⑪		
⑰	< 삭제 '95. 8. 23 >								
㉗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 삭제 >	< 삭제 >	< 삭제 >		도시개발법 제6조제1항 권리변경행위신고 규정 폐지('99. 3. 31)로 삭제
㉘	< 삭제 '95. 8. 23 >								
㉙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전용허가		1건	전문료의 1/1000	< 삭제 >	< 삭제 >	< 삭제 >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수수료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⑤	보진, 사회관계				②				
①	치과기공소 인정				①				
가.	인정신청		1건	10,000	가.		
나.	양도 · 양수신고		"	10,000	나.		

현		행		개			정		안	요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②	안경업소			②									
	가. 개설등록	1건	10,000	가.							
	나. 양도·양수신고	"	10,000	나.							
③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20,000	③							
④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	10,000	④							
⑤	의료기관 개설신고	"	20,000	⑤							
⑥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10,000	⑥							
⑦	유기장업 허가 및 신고				<삭> 제 >									유기장업이 유원시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명칭을 변경하여 "4. 관광관계"란으로 이기
	가. 컴퓨터게임장업				< " >									영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수료징수조례가 2001. 12. 10. 제정되어 삭제
	으.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20,000		< " >		<삭> 제 >		<삭> 제 >					
	: 변경	"	10,000		< " >		< " >		< " >					
	으. 동 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25,000		< " >		< " >		< " >					
	: 변경	"	13,000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나. 종합유원시설업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40,000	<삭	계>	<삭	계>	<삭	계>				"4. 관광관계"란으로 이기
	: 변경	"	20,000	< "	>	< "	>	< "	>				
오동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50,000	< "	>	< "	>	< "	>				
	: 변경	"	25,000	< "	>	< "	>	< "	>				
다. 기타유기장업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20,000	< "	>	<삭	계>	<삭	계>				공중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던 유기장업이 관광진흥법에 규정되면서(98. 2. 8) 일정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일반 및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명칭을 변경하여 "4. 관광관계"란으로 이기
	: 변경	"	10,000	< "	>	< "	>	< "	>				
오동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25,000	< "	>	< "	>	< "	>				
	: 변경	"	13,000	< "	>	< "	>	< "	>				
⑧ 숙박업신고													
가. 호텔업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70,000	< "	>	<삭	계>	<삭	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99. 2. 8)되면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변경	"	35,000	< "	>	< "	>	< "	>				
오동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90,000	< "	>	< "	>	< "	>				
	: 변경	"	45,000	< "	>	< "	>	< "	>				

현		행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안	안	유	
						기준	요액		
나. 콘도미니엄업				< 삭	제 >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99. 2. 8)되면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70,000	< " >		< 삭제 >	< 삭제 >		
: 변경		"	35,000	< " >		< " >	< "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90,000	< " >		< " >	< " >		
: 변경		"	45,000	< " >		< " >	< " >		
다. 여관업(농원여관업포함)				< " >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25,000	< " >		< 삭제 >	< 삭제 >		
: 변경		"	13,000	< " >		< " >	< "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30,000	< " >		< " >	< " >		
: 변경		"	15,000	< " >		< " >	< " >		
라. 여인숙업				< " >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25,000	< " >		< 삭제 >	< 삭제 >		
: 변경		"	13,000	< " >		< " >	< "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30,000	< " >		< " >	< " >		
: 변경		"	15,000	< " >		< " >	< " >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⑨	목욕장업 신고			<삭제>		<삭제>	<삭제>				
	가. 공동탕업			< " >		< " >	< " >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6,000	< " >		<삭제>	<삭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99. 2. 8)되면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변경	"	3,000	< " >		< " >	< " >				
	○ 동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10,000	< " >		< " >	< " >				
	: 변경	"	5,000	< " >		< " >	< " >				
	나. 가족탕업			< " >		< " >	< " >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6,000	< " >		<삭제>	<삭제>				
	: 변경	"	3,000	< " >		< " >	< " >				
	○ 동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10,000	< " >		< " >	< " >				
	: 변경	"	5,000	< " >		< " >	< " >				
	다. 한중막업			< " >		< " >	< " >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6,000	< " >		<삭제>	<삭제>				
	: 변경	"	3,000	< " >		< " >	< " >				
	○ 동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10,000	< " >		< " >	< " >				
	: 변경	"	5,000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라. 사우나담연			< 삭 제 >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1건	40,000	< " >	< 삭제 >	< 삭제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20,000	< " >	< " >	< "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50,000	< " >	< " >	< "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25,000	< " >	< " >	< " >
마. 터키담연			< " >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1건	40,000	< " >	< 삭제 >	< 삭제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20,000	< " >	< " >	< "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50,000	< " >	< " >	< "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25,000	< " >	< " >	< " >
바. 복합목욕탕연			< " >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1건	40,000	< " >	< 삭제 >	< 삭제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20,000	< " >	< " >	< "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50,000	< " >	< " >	< "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25,000	< " >	< " >	< " >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99. 2. 8)되면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
생관리용역업, 세탁업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
뀌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공중
위생관리법 제3조)

현		행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00	이·미용업신고			<삭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99. 2. 8)되면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마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1건 "	2,300 1,2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	10,000 5,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01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삭제>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1건 "	2,300 1,2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	3,500 2,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02	세탁업 신고			<삭제>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1건 "	2,300 1,2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변경	" "	3,500 2,3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행			개			개	정	사	유
구	분	기	요	구	분				
⑬	위생처리업 신고				⑬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2,300	○		...			
	: 변경	"	1,200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3,500	○		...			
	: 변경	"	2,300			...			
⑭	세척제 제조업 신고				⑭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10,000	○		...			
	: 변경	"	5,000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15,000	○		...			
	: 변경	"	8,000			...			
⑮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⑮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2,300	○		...			
	: 변경	"	1,200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3,500	○		...			
	: 변경	"	2,300			...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안	
						기준	요액
⑤	장난감제조업 신고			<삭제>			
	○ 읍·면지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1건	2,300	< " >		<삭제>	<삭제>
	: 변경	"	1,200	< " >		< " >	< " >
	○ 동 지 역 : 신규(지위승계포함)	"	3,500	< " >		< " >	< " >
	: 변경	"	2,300	< " >		< " >	< " >
⑥	이·미용사 면허교부			< " >			
	: 신규	1건	2,300	< " >		<삭제>	<삭제>
	: 재교부	"	2,000	< " >		< " >	< " >
	7. 문화공보관계			< " >			
①	공연자 등록신청	1건	2,000	< " >		<삭제>	<삭제>
②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	300	< " >		< " >	< " >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99. 2. 8)되면서 관계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삭제

수수료가 도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

공연법의 개정(99. 2. 8)으로 공연자등록제가 폐지되어 삭제

현		행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개	정		
③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공연법의 개정(99. 2. 8)으로 공연장설치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수수료는 시장이 도시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삭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나.	시설공연장	"	3,000	< " >	< " >	< " >	< " >				
다.	임시공연장	"	500	< " >	< " >	< " >	< " >				
④	공연장 중축허가	1건	5,000	< " >	< " >	<삭제>	<삭제>	공연법의 개정(99. 2. 8)으로 공연장설치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수수료는 시장이 도시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삭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가.	공연장	"	1,500	< " >	< " >	< " >	< " >				
나.	시설공연장	"	150	< " >	< " >	< " >	< " >				
다.	임시공연장	"	300	< " >	< " >	< " >	< " >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에 "수수료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⑤	공연장 설치허가중 개교부 신청	"	1,000	< " >	< " >	< " >	< " >	공연법의 개정(99. 2. 8)으로 각본 사전심사제가 폐지되어 삭제			
⑥	각본등 심사신청	"	6,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97. 3. 7)되어 삭제			
⑦	< 삭제 '95. 8. 23 >	"	2,000	< " >	< " >	< " >	< " >				
⑧	사회단체 기부등록 신청	1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⑨	사회단체 기부등록 변경 신청	"		< " >	< " >	< " >	< " >				

현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신설></p> <p>【별표 2】</p>	<p>행정정보공개열람·복사등수수료요율표</p>			
	<p>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p>			
<p>공개대상</p>	<p>원본의 열람·시청</p>	<p>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p>	<p>전산자료의 열람·시청</p>	<p>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p>
<p>문서· 대장 등</p>	<p>○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 마다 100원</p>	<p>○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50원</p>	<p>○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 마다 100원</p>	<p>○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p>도면· 카드 등</p>	<p>○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p>	<p>○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p>	<p>○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p>	<p>○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음 녹 테이프</p>	<p>○ 시청 - 1편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개(30분 기준)마다 700원</p>	<p>○ 복제 - 1편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p>○ 시청 - 1편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p>	<p>○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p>화 녹 테이프 (비디오)</p>	<p>○ 시청 - 1편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p>	<p>○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p>○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p>		
<p>영화필름</p>	<p>○ 시청 - 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켤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p>	<p>* 매체비용은 별도</p>			

개 정 사 유	개 정 안				
현 행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프로 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x 5" 200원 5" x 7" 300원 8" x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x 5" 50원 · 5" x 7" 100원 8" x 10" 150원 ○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의안검토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234호
- 의안명 :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2. 제안이유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요율표를 별표 2로 분리함(안 제3조 및 별표 2)
- 나.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과 전자입찰참가수수료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명칭과 조문이 맞지 않는 조항을 관계법령과 일치시킴 : 수수료의 감면외 6건(안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라. 개별법령, 경상북도조례, 영주시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를 규정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 : 병적증명의 24건
- 마. 관계법령이 개정 및 폐지되어 근거규정이 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 : 부양사실증명의 28건
- 바. 발급실적이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위임조항이 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 : 영업주에 관한 증명의 28건

4. 검토의견

- 영주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요일) : 제증명수수료요일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요율을 “별표 2”로 분리함.
 - 안 제5조제2항 신설 :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과 전자입찰참가수수료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고,
 -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명칭과 조문이 맞지 않는 조항을 관계법령과 일치시킴.
 - 수수료의 감면의 6건
 - 개별법령, 경상북도조례, 영주시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 요율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함.
 - 병직증명의 24건
 - 관계법령이 개정 및 폐지되어 근거규정이 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
 - 부양사실증명의 28건
 - 발급실적이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위임조항이 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
 - 영업주에 관한 증명의 28건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명칭과 조문이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 관계법령이 개정 및 폐지되어 근거 규정이 없거나 개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수수료 조항과
- 발급실적이 없고 상위법령에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일제히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1. 12.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